

التميمي و شركاه
ALTAMIMI & CO.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Doing Business in Dubai 두바이 회사 설립 가이드



Doing Business in Dubai

두바이 회사 설립 가이드

Published by Al Tamimi & Company

두바이 본사 (Head Office, DIFC)

6th Floor, Building 4 East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PO Box 9275
Dubai, UAE
T: +971 4 364 1641
F: +971 4 364 1777
E: info@tamimi.com

Key Contacts

Husam Hourani
Managing Partner
h.hourani@tamimi.com

Samer Qudah
Partner, Regional Head
of Corporate Structuring
s.qudah@tamimi.com

Samir Kantaria
Partner, Regional Head
of Employment
s.kantaria@tamimi.com

Design: Noura Haggag

© Al Tamimi & Company. All rights reserved 2018.

The contents of this book are not intended to be a substitute for specific legal advice on any individual matters.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distribut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 electronic or mechanical methods,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except for individual use and other non-commercial uses permitted by copyright law. The permission to recopy by an individual does not allow for incorporation of the material in part or in whole of any work or publication, whether in hard copy, electronic or any other form, unless specific mention is made to the source, "Doing Business in Dubai, published by Al Tamimi & Company," and written permission is granted by the firm.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us.

www.tamimi.com



Korea Group

중동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80년대 이후부터 건설, 인프라,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난 10 년간 저희 Al Tamimi & Company는 중동에서 한국기업들의 성장을 주목해 왔으며 다양한 한국 고객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전담 팀 "Korea Group"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종은 변호사가 이끄는 Korea Group은 2012 년부터 한국의 수많은 대기업 계열사, 정부기관, 공기업,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 고객들에게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법률적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략적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한 결과, 현재 120여개 이상의 한국업체로부터 성실한 법률 고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Korea Group은 한국어에 능통한 변호사 4인 및 전문스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동 법률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통상적인 기업자문에서부터 대형 거래 및 각종 분쟁의 중재 및 조정 등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중동지역의 전문인력과 함께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orea Group Key Contacts:

이종은 변호사
Jongeun (Christina) Lee
Head of Korea Group
j.lee@tamimi.com

하지원 변호사
Jiwon Ha
Senior Associate
j.ha@tamimi.com

송형민 변호사
James Song
Senior Associate
h.song@tamimi.com

박이세 변호사
Issey Park
Associate
issey.park@tamimi.com

강윤정
Yoon Kang
Paralegal
y.kang@tamimi.com

박인혜
Inhye Park
Paralegal
i.park@tamimi.com

김경수
Kyungsu Kim
Legal Assistant
k.kim@tamimi.com

About Al Tamimi & Company

중동 지역 (Middle East) 최대의 로펌인 Al Tamimi & Company는 중동의 사업 환경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궁극적인 이익을 위해 단순 법률 자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Al Tamimi & Company는 1989년 UAE에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현재 총 330명의 변호사와 620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로펌으로서, Al Tamimi & Company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법률 전문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와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 세계에서 모인 각 분야 최고의 경력 변호사들이 중동 현지에 깊이 있는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 및 관할에서의 소송 진행 및 현지법 자문 능력은 저희 Al Tamimi & Company 만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강점입니다.

특히 저희 Al Tamimi & Company 는 중동 최대의 로펌인 동시에 최초로 유일하게 한국어에 능통한 변호사 4인 및 전문스텝 3인으로 구성된 한국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진출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기업 및 유수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의 수요와 실무에 최대한 부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지난 20여 년간 한국기업들의 성실한 동반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www.tamimi.com

**UAE**

Abu Dhabi
Dubai, DIFC
Dubai Internet City
Dubai, The MAZE Tower
Ras Al Khaimah
Sharjah

BAHRAIN

Manama

EGYPT

Cairo

IRAQ

Baghdad
Erbil

JORDAN

Amman

KUWAIT

Kuwait City

OMAN

Muscat

QATAR

Doha

SAUDI ARABIA

Al Khobar
Jeddah
Riyadh

Foreword by Al Tamimi & Company

저희 Al Tamimi & Company 의 'Doing Business in Dubai' 가이드북은 두바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수많은 회사 및 개인에게 필요한 핵심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를 통하여 투자자들은 각각 운영하고자 하는 특정 사업을 기반으로 회사 설립 시 결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회사 운영 시 고용주의 입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주요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통찰력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서, 두바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였고, GCC 지역을 뛰어넘는 상업적, 문화적, 경제적인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그 역량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Doing Business' 가이드북 시리즈는 새로운 사업체 설립 시에도 도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최신 법제 정보 및 정책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저희는 본 가이드를 통해 비즈니스와 법률적 관점에서 두바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실 때 꼭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 Al Tamimi & Company는 여러분 모두의 사업의 번영을 기원하며,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ssam Al Tamimi
Senior Partner & Founder
Al Tamimi & Company



Husam Hourani
Managing Partner
Al Tamimi & Company



Seeing the bigger picture

Al Tamimi & Company knows more than just the law. We focus on the here and now and also understand that our advice may affect the future. We therefore ensure our lawyers think about the situation at hand, current and future challenges and potential opportunities.

In a region where the legal landscape is never black and white, we have the knowledge, expertise and cultural awareness to make sure our clients are at the forefront of doing business in the Middle East.

17 Offices | 9 Countries | 350 Lawyers

www.tamimi.com

About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출범하였습니다.

1962년 뉴욕, 홍콩, 로스앤젤레스, 방콕에 해외무역관을 동시에 설치하며 발족한 이래, 우리 나라 무역의 증진과 더불어 확대개편과정을 겪으며 발전하였고 2016년 8월 현재는 86개국에 126개의 무역관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지역본부는 산하에 13개 해외무역관을 두어 중동지역 각국의 다양한 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비즈니스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KOTRA는 한국 기업 및 해외 투자자들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KOTRA Dubai 두바이 무역관 (중동지역본부)

#204, Level 102
Arenco Tower
Dubai Media City
Dubai UAE
PO BOX 12859

T: +971 4 450 4360
E: ktcdxb@emirates.net.ae



Foreword by KOTRA

한국과 두바이의 무역 관계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처음으로 두바이 데이라(Deira)에 무역관(Korea Trade Center)을 설치하던 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두바이의 선구적 지도자였던 셰이크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 (Sheikh Rashid bin Saeed Al Maktoum)이 시작한 본격적 경제개발정책은 오늘날 전 세계인이 두바이를 주목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한국 역시 그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함으로써 양국은 해를 거듭하며 함께 성장해 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UAE 양국이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이적이고 성공적인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음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무역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지속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국의 비즈니스 교류관계에서 KOTRA가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는 두바이의 랜드마크가 된 버즈칼리파를 건설한 삼성물산과 같은 대기업서부터 한국의 가장 혁신적인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두바이의 많은 기업들은 한국의 기업들과 많은 관계와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최고를 향한 열정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양국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모쪼록 Al Tamimi & Company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본 "Doing Business in Dubai" 가이드북이 많은 한국기업의 두바이 진출에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동지역본부장

권 용 석

Contents

About Korea Group.....v

About Al Tamimi & Company.....vi

Foreword by Al Tamimi & Company.....viii

About KOTRA.....x

Foreword by KOTRA.....xii

About Dubai.....3

Setting up in Dubai.....7

Employment Law in Dubai.....29



An aerial night photograph of the Dubai skyline. The image shows a dense cluster of skyscrapers, many of which are illuminated with blue and white lights. A prominent building in the foreground has a large, glowing circular light on its facade. A winding road with light trails from traffic is visible in the lower left. The city extends to the horizon, with the sea visible on the right side.

About Dubai

About Dubai

두바이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인 도시로 인식되는 두바이는 200개 이상의 국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버즈 칼리파(Burj Khalifa)가 위치한 곳으로 유명하며, 눈을 땔 수 없게 만드는 대형 쇼핑몰과 화려한 호텔들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끄는 곳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혁신적인 건설 개발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세계적인 이벤트를 치러낸 결과로서, 2013년 11월 두바이는 2020년 세계엑스포의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약 2,5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엑스포의 개최는 두바이 경제를 부양하며 세계적인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 두바이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가?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 연방(UAE)을 형성하는 7개의 토후국 중에 하나입니다. UAE 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상주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중동의 비즈니스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석유 부분에 크게 의존하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 두바이 경제는 관광 · 무역 · 항공 · 부동산 · 금융 서비스 등 여러 부문으로 산업 다각화를 이루었으며, 석유 산업은 GDP의 3%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자유 무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업친화적 자세 정책을 가진 비즈니스 환경과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 항만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만이 있으며, 중동에서 가장 큰 항구가 있는 두바이는 주변 지역의 교통과 운송의 허브로서,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두바이 진출을 선택하게 하는 핵심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별 프리존의 설립은 독특한 투자 환경의 기회를 제공하며, 두바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매력을 한층 더하고 있습니다.

통계

인구:

대략 200만 명

종교:

이슬람 교

화폐단위 (통화):

아랍에미리트 디르함(AED), 1 디르함 = 100 필스(fil)

언어:

공식언어는 아랍어이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영어가 널리 통용됩니다.

정부:

부통령이자 UAE 의 수상, 두바이의 통치자인 His Highness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의 리더십 아래, 자유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을 향한 두바이 정부의 강한 의지로, 두바이는 중동 지역의 가장 경쟁력있는 비즈니스 허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전략적 인프라 투자와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 정책으로,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n aerial photograph of Dubai, United Arab Emirates, showing several artificial islands in the Persian Gulf. The islands are densely packed with residential buildings, mostly with brown and orange roofs. The water is a deep blue-green, and the sky is clear. In the background, the Palm Jumeirah and the Atlantis The Palm hotel are visible. The text "Setting up in Dubai" is overlaid in the center of the image.

Setting up in Dubai

Setting up in Dubai

투자 시 고려사항

최근 두바이는 글로벌비즈니스의 주요 허브로 부상하였습니다. 두바이에미리트 지도부는 기존의 부존자원에 의존하던 경제구조를 무역 · 관광 · 금융 · 물류 등의 영역으로 다각화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에의 강한 열망이 두바이의 정치적 안정성, 지리적 이점, 자유시장경제와 결합하여 많은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장세로 인하여 두바이는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관광객뿐 아니라 많은 다국적기업 및 창업가들이 두바이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침체기를 벗어난 현재의 두바이는 전세계의 대도시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매우 활기넘치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두바이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특히 아래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위치: 두바이는 중동(Middle East), 북아프리카(North Africa) 및 남아시아(South Asia)를 연결하는 MENASA 지역의 중심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국제상거래에 더할나위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두바이의 항공사인 에미레이트항공(Emirates Airline)은 전세계 140개 도시로 취항하고 있으며, 두바이를 주변 지역의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두바이의 법률 및 규정은 최적의 상거래를 위하여 융통성있는 최신의 법률적 체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ダイナ믹하면서도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으로, 프리존 내에 회사를 설립할

시, 거의 제로에 가까운 법인세나 개인세 혜택 및 과실송금(Repatriation of money)의 자유를 포함하는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두바이 정부는 두바이가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경제개발국(DED)은 불필요한 관료체계를 없애고,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중입니다. 경제개발국은 두바이로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더욱 많은 회사들이 두바이로 몰려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 두바이는 중동 내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및 서비스: 두바이는 경제 및 관광산업의 부양을 목표로 초현대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두바이의 교통 및 통신 시설은 그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으며, 대부분의 은행 및 법률회사들은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정치적 안정성, 저렴한 설립 비용, 최적의 입지 및 생활 수준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레저 시설과 훌륭한 식당,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 등 모든 면에서 투자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업하기

두바이는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규모에 맞게 최대한 간단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회사 설립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법적 구조

두바이에서는 직접적인 영업을 위해 개인사업 혹은 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에이전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a. 개인 사업주 (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주는 본인 명의로 발급된 사업 면허(Trade License)에 따라 개인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순한 사업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업 형태는 사업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의 자산 한도 내에서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 사업주는 독립적인 법인격(legal entity)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로 UAE 및 GCC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만이 두바이에서 개인 사업주로서의 영업이 허용되지만, 최근 UAE국적자가 개인사업주를 위한 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외국인에게 임대하여 해당 사업을 전적으로 경영하고 사업의 이익도 취하도록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약정은 본질적으로 불법이며, 당사자들간의 사업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업 면허의 법적 명의자가, 이러한 별도의 약정을 인지하지 못한 제3자와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100%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UAE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개인 사업주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특정 분야에서는 외국인이 개인 사업주로 활동하는 것이 제한되며, 해당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서비스 제공
- 엔지니어링 자문
- 법률 자문
- 컴퓨터 컨설팅 자문
- 유사 서비스 및 비무역 활동

외국인 개인 사업주는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local service agent)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의 거주지는 신규사업 스폰서십 명의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 형태의 영업 절차는 개인 사업주가 되는 개인의 국적 및 신원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관련 문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경제개발부로부터 사업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b. 회사의 형태

두바이에서의 사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설립 형태를 관장하는 주요 법안인 연방 회사법(Commercial Companies Law, Federal Law No. 2 of 2015, as amended)(이하 "CCL")의 규정에 기초한 두바이에서 설립이 가능한 회사의 형태 및 주요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에 나열된 회사의 형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Joint Liability Company: 공동무한책임회사(Joint Liability Company)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각각의 파트너가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게 되는 2명 이상의 파트너 간의 약정을 통해 설립됩니다. CCL에 따르면, UAE 국적자만을

회사의 형태	파트너/ 주주의 구성	최소 자본금 요건
Joint Liability Company	2명 이상의 공동/무한책임 파트너로 구성	없음
Limited Partnership Company	공동/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파트너와 파트너십 내의 지분에 한해서만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파트너로 구성	없음
Public Joint Stock Company	5명 이상의 유한책임 주주로 구성	AED 30,000,000
Private Joint Stock Company	최소 2명에서 최대 200명의 파트너 및 주주가 유한책임	AED 5,000,000
Limited Liability Company	최소 2명에서 최대 50명의 파트너 및 주주가 유한책임	없음
Branch of a Foreign Company	없음	없음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무한책임회사의 형태는 두바이에서 사업을 하기 원하는 해외투자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Limited Partnership Company: CCL은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Company)을 “회사의 채무에 대해 공동으로 무한책임을 지며 trader로 활동하는 1명 이상의 무한책임파트너(active partner)와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각자 자본금으로 투자한 지분 한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1명 이상의 파트너(silent partner)로 구성된 회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책임파트너십은 본질적으로 공동무한책임회사의 수정된 형태입니다. 공동무한책임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책임파트너십에서도 UAE 국적자만이 무한책임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외국인도 제3자와 관련한 회사의 대외 업무는 가능하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파트너(silent partner)가 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파트너(silent partner)는 파트너십 내 자본투자비율에 한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파트너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이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파트너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경우 해당 파트너는 더이상 유한책임파트너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되어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한책임파트너십의 경영권은 무한책임파트너들에게만 부여됩니다.

Public Joint Stock Company (PJSC): CCL은 PJSC를 “회사 내 자본이 전액 분할 소유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CCL에 따르면 PJSC의 주주들은 회사 내 자본 대비 각자의 지분에 한해서만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PJSC의 주식 액면가는 최소 AED 1에서 최대 AED 100까지 가능하며, 최소자본금은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AED 30,000,000, 금융 회사의 경우에는 AED 40,000,000, 보험회사의 경우 AED 250,000,00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PJSC의 설립을 위해서는 창립주주간 계약서, 전체 사업계획/사업성평가를 거친 공모용 모집요강, 감사증명서, 실사보고서, 정관이 필요하며, 이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서 발급한 공증된 서명에 부합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부로부터 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해당 설립회사의 명칭은 반드시 "Public Joint Stock Company"로 끝나야 합니다.

PJSC는 반드시 최소 5명 이상의 창립주주가 있어야 하며,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최소 3명에서 최대 11명(반드시 홀수인원이어야 함)으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 임기 만료 후 이사는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반드시 UAE 국적자여야 하며, 이사회 의 과반 이상이 UAE 국적자여야 합니다.

적어도 순이익의 10%는 예비비 계좌의 금액이 회사의 전체 자본의 절반에 이르게 되는 시점까지, 예비비 계좌로 할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PJSC 지분의 최소 51%는 UAE 국적자가 보유하여야 합니다. 창립주주는 반드시 최소 30%에서 최대 70%에 해당하는 회사 자본을 출연하여야 하고, 신규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기존의 주주들은 기존의 지분비에 따라 우선청약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투자자들은 CCL이 요구하는 PJSC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고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PJSC의 설립과 운영, 자본 요건 등에 대한 제약들로 인하여 대부분의 해외투자자들은 PJSC를 적합한 사업형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JSC는 최근 민간 부문과 관련하여 점점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자본 조달이 가능하므로 현재 UAE 내에는 100여개가 넘는 PJSC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프로젝트에 소규모의 해외 및 로컬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가 보험 및 자본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PJSC를 반드시 설립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을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제 3자를 대리하는 금융투자 업무의 경우, 반드시 PJSC 또는 Private Joint Stock Company를 설립해야만 합니다.

Private Joint Stock Company: Private Joint Stock Company는 본질적으로 PJSC와 동일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1. 최소 자본금 요건은 AED 5,000,000입니다.
2. Private Joint Stock Company의 주식은 2개의 회계년도가 종료되고 PJSC로 전환 후(기타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3. 최소2명의 창립주주가 필요합니다.

Private Joint Stock Company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AED 5,000,000이기 때문에, 해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회사의 형태이며, 설립절차는 PJSC와 동일합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유한책임회사(이하 "LLC")는 CCL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외투자자들이 두바이에 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적합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LLC는 제3자를 대리하는 금융, 보험,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 이같은 업무를 위하여는 PJSC가 설립되어야만 합니다. CCL은 LLC를 "최소 2명에서 최대 50 명의 파트너가 자신의 지분에 한해서만 유한책임을 지고, 파트너의 참여는 양도증서를 통해 대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LLC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자본 조달을 위한 주식청약 공모는 불가능합니다.
- 외국인 파트너의 회사 내 지분은 최대 49%까지로 제한되지만, 회사의 실제 경영은 외국인파트너도 가능합니다.
- 매니저는(외국인을 포함하여) 1명 이상, 5명 이하의 파트너가 가능합니다.
- 실제로는, 주로 로컬파트너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으며, 외국인 파트너에게 주주총회에서의 투표권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주기도 합니다.
-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내에 회사의 손익이 실제 자본비율과는 다르게 분배됨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반드시 UAE내 자격요건을 갖춘 공인 회계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회계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지사(Branch Office): 설립되는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100% 보유하기 위하여 외국회사들은 모기업(Parent Company)의 지사(Branch

Office)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CCL은 UAE내의 지사 설립과 관련한 규정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사는 법적으로 모기업의 일부이자 그 연장선에 있는 형태로서, 모기업과 다른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사의 명칭은 모기업의 명칭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사의 경우에도 로컬에이전트는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개인 로컬에이전트가 선호되고 있지만, 에이전트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반드시 UAE 국적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로컬에이전트는 지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으며, 단지 연방 및 지방정부 부서와 관련된 부분(예를 들어, 이민 업무 등)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 에이전트는 매년 일정금액(Fixed Annual Fee)을 수취하게 됩니다.

UAE내에 설립된 지사는 모기업과 동일 업종에만(관련 부서를 통해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모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로컬 트레이드 에이전트(Local Trade Agents)에게만 허가되므로, 지사는 이러한 수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경제개발부로부터 지사에 대한 허가(License)를 받게 되면, 모기업은 지사를 통하여 두바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의 활동은 취득한 허가의 유형, 특히 모기업의 활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대표사무소도 역시 CCL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사무소는 모기업의 영업을 촉진(Promote)하는 행위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사와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모기업이 특정 제품의 판매 및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두바이 내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한다면, 해당 대표사무소는 UAE 내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및 생산 판로를 개척하는 영업행위만이 가능하며 직접적인 판매 및 생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제약 외에도, 대표사무소는 대출(Credit Facilities)을 받거나 제안할 수 없다는 제약을 받습니다.

지사 설립 시와 마찬가지로, 대표사무소 설립 시에도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로컬 에이전트 요건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Civil Companies: CCL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들과는 별도로, UAE의 민사거래법(UAE Civil Transaction Law, Federal Law No. 5 of 1985 (Civil Code))(이하 "민법")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아래의 세가지 형태의 회사 설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Companies to perform work (work/service companies)
- Speculative venture partnerships
- Mudaraba companies

CCL 상 설립되는 회사와 민법상 설립되는 회사(Civil Company)와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상행위인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지적인 능력, 취득 정보의 활용/투입 및 기술의 사용(예, 목공)을 포함하는 영업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민법상 설립되는 회사가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이 비영리단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영업행위의 유형에 따른 UAE 내 법률시스템에서의 구분일 뿐입니다.

위에 언급된 세가지 유형의 형태는 엄격히 말하자면 법적으로 UAE 내에서는 CCL상의 회사만이 회사의 형태로 설립되기에, 회사는 아닙니다. 대신, 이러한 형태는 사업의 법적구조보다는 영위하는 활동(Civil Activity)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이 UAE 내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행위를 영위하는 회사와 이들을 구분하지는 않으며, 모든 사업에 대하여 '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만, 민법상 설립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민법의 지배를 받지만, 상거래를 하는 회사들은 CCL의 규정을 따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Civil Company가 설립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은 컨설팅 업무와 목공과 같이, 상거래가 아닌 민간 업무를 위해 설립하는 UAE 국적자들 간 혹은 UAE 국적자와 외국인 간에 설립되는 파트너십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민간

활동은 LLC 나 기타 다른 형태의 회사로 설립될 수 없으며, 그렇기에 CCL 상의 최소자본금 요건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Civil Company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행위는 민간업무에 한합니다.

Companies to Perform Work (Service/Professional Companies)

민법상,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에 대하여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회사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업무를 단독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업무의 분배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Speculative Venture Partnership

2명 이상의 사람이 신용으로 자산을 매입하고 이윤을 남기어 판매한 후, 합의된 바에 따라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하는 파트너십의 형태입니다.

Mudaraba Companies

Mudaraba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본금을 내고, 그 대가로 다른 당사자인 Mudarib이 이윤을 내기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Mudarib은 자본금에 대한 신탁관리자인 동시에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는 동업인으로 간주됩니다.

Mudarib 이 유효하려면 다른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 중 하나는 “Mudarib측의 불법행위가 없는 한, Mudarib은 자본금의 손실 및 지출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이 약정에 명시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Mudarib은 자본의 실소유주를 대리하여 지출을 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자본의 실소유주는 민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약정의 조건을 명시할 수 있지만, 민법상 초래된 손실에 대해서는 자본의 실소유주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약정조항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c. Commercial Agents

두바이의 외국회사들은 수입업자(importers)와 무역업자(traders)와의

약정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적인 다량의 거래에는 이러한 약정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많은 양의 제품을 두바이로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제조업자 혹은 무역업자들은 커머셜 에이전시(Commercial Agency)의 설립을 통해 로컬 커머셜 에이전트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국가와는 달리, UAE의 사법체계는 Commercial Agency의 형태를 Registered Commercial Agency와 Unregistered Commercial Agency의 두 가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형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각 에이전시를 관장하는 일련의 규정입니다.

Registered Commercial Agency (등기 대리인): Registered Commercial Agency는 연방대리인법(Federal Law No. 18 of 1981 on the Organisation of Commercial Agencies as amended by Federal Law No. 14 of 1988; 이하 "대리인법")에 "국내에서 수수료(commission) 및 이윤을 위해, 재화 및 서비스를 유통, 판매,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agent)이 위임인(principal)을 대리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으며, 위임인은 "생산자, 제조업자, 공인 독점수입업자 혹은 생산자 대표"를 의미합니다.

대리인법 상 Registered Commercial Agency가 대리인으로서 갖는 다양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clusivity

등기 대리인은 위임계약 상의 목적이 되는 재화를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등기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간에 수입된 재화는 대리인 혹은 경제계획부(Ministry of Economy & Planning)의 승인이 없는 한, 세관(Custom Department)에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임인이 수입한 재화에도 적용됩니다. 위임인 혹은 타인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역에이전트(trade agent)에게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위임인이 독점적 대리인을 두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경우에도 제 3자가 상기 재화를 수입하는 데 제한을 두는 것은, 위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Commissions

등기 대리인은 그들이 직접 올린 매출뿐 아니라 위임인 및 기타 당사자가 올린 매출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해당 매출에 공헌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인은 위임계약이 약정을 구성하는 제품과 관련 지역을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Non-termination and non-renewal

위임인은 대리인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당 위임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의 발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중과실, 합의를 위반하는 경쟁제품의 거래, 위임관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목표매출달성을 하지 못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제계획부의 재량에 달려 있으나, 이러한 판단은 법원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위임인은 이러한 경우 경제계획부가 아닌 법원으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위임계약의 만료 시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의 부당해고 및 위임계약의 미갱신의 경우, 위임인은 이전 대리인이 겪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Unregistered Commercial Agency (미등기 대리인): 한편, Unregistered Commercial Agency는 통상적인 위임인-대리인 관계로서, 대리인법상 성립된 관계가 아니므로, 대리인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등기 위임관계는 위임인과 대리인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추가적 요건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은 등기대리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필수 요건을 갖춰 Registered Commercial Agency 를 설립하고자 할 것입니다.

대리인법 상에는 경제계획부 등기상 등기되지 않은 위임관계는 무효이며, 관련한 어떠한 클레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위임관계도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유효한 상거래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미등기위임관계는 Contract Agencies, Commission Agencies, Commercial Representation의 세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대리인과는 달리, 미등기대리인은 반드시 UAE 국적이거나 UAE 국적자가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등기대리인도 UAE 내에서 사업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임인의 경우 위임계약이 만료한 경우를 포함하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므로, 위임인의 입장에서는 미등기위임관계를 갖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 관할 (Jurisdiction)

UAE법은 다양한 관할에서 (앞서 살펴본 대로) 여러가지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두바이본토(Mainland Dubai)의 종래 관할 이외에도, 두바이에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다양한 특수 목적의 프리존(Freezone)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프리존은 지리상으로는 두바이 내에 위치하지만 별개의 법적 관할권으로 간주되며 대개 독자적인 법(형법 제외)이 적용됩니다. 두바이본토와 프리존 간의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Offshore Jurisdiction: 두바이본토 및 프리존 관할 외에, 두바이의 Jebel Ali Freezone(제벨 알리 프리존)도 'Offshore Jurisdiction'을 제공합니다. Offshore Jurisdiction에 설립된 회사들은 주로 지주회사로서, UAE 본토의 지정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다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Offshore법인은 운영법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Offshore법인 설립 시에는 외국 회사의 경우 프리존의 다른 혜택은 향유하면서도 반드시 사무실 공간 유치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논의된 모든 회사의 형태를 프리존 내에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설립이 가능한 법인은 LLC(1인 및 다수 주주), 지사(Branch) 및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입니다.

하지만 두바이본토로 재화를 판매하고자 하는 프리존 법인의 경우, 재화를 유통할 수 있는 두바이본토 내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외국법인의 경우 (등기여부는 관계 없이) 로컬커머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특징	Mainland Dubai	Freezone
LLC 의 지분	51%의 지분은 UAE국적자 혹은 UAE국적자 소유의 법인이 소유해야 함.	비UAE국적자가 100% 지분 소유 가능.
최소 주주	LLC의 경우 2명	LLC의 경우 1명: 1인 LLC 의 경우 Freezone Establishment, 다수주주LLC의 경우 Freezone Company로 명명.
지사 (Branch)	서비스에이전트는 UAE 국적자.	UAE국적의 서비스에이전트 요건 없음
사업활동	제한조건에 따라 두바이본토 법인은 본토 내에서 허가된 사업활동 가능	프리존 내 법인은 두바이본토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음.
최소자본요건	LLC는 LLC의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갖춰야 함. 법적 최소자본요건은 없음.	프리존 내 LLC는 최소자본요건이 적용. 프리존에 따라 AED 50,000 - AED 100,000.
세금	세금 체계가 있긴 하나, 당분간 효력 없음. 따라서, 금융 등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 Dubai내 운영법인은 법인세 없음.	프리존 내의 법상 대개 50년간(연장 가능)회사 및 직원이 모든 세금 면제받는 면제기간 규정.
사무실 취득 여부	의무적	의무적
관세	보통 송장금액의 5%	회사내 소비용으로 수입된 경우 혹은 UAE외 지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 면제됨.

그러나 외국이나 프리존에서 두바이 본토로 재화를 들여오는 경우, 수입 관세(현재 재화가치의 5%)가 적용됩니다.

3. 사업시 고려사항

Foreign Ownership

프리존에서는 외국인이 법인의 100% 소유주가 되는 것이 허용되는 데 반해, CCL은 두바이본토에서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UAE 국적자가 반드시 최소 51%의 지분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형태에 따른 UAE 국적자의 최소 소유 지분 요건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회사의 형태	UAE 국적자의 최소 소유 지분 요건
Joint Liability Company	회사 내 모든 파트너가 UAE 국적자.
Limited Partnership Company	회사 내 모든 무한책임 파트너가 UAE 국적자.
Public Joint Stock Company	UAE국적자의 자본이 최소 51%, 이사회의 과반 이상이 UAE국적자로 구성, 이사회의 의장 역시 UAE 국적자.
Private Joint Stock Company	UAE국적자의 자본이 최소 51%, 이사회의 과반 이상이 UAE국적자로 구성, 이사회의 의장 역시 UAE 국적자.
Limited Liability Company	UAE국적자의 자본이 최소 51%. 회사의 매니저 및 이사로 외국인 선임 가능.
Branch of a Foreign Company	두바이 본토에 세워진 지사의 경우, UAE 국적의 서비스 에이전트 요구.

앞서 언급된 사항 이외에도, 소수 외국인 주주들의 권리는 다음의 사항들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 CCL은 회사와(소수 주주를 포함하는) 주주 모두가 이사들에게 잘못된 경영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 CCL은(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 후 회사 장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 주주들에게는 이사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만장일치 혹은 75% 이상의 주주 혹은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중요 사안들과 소수 외국인주주의 출구전략 등을 주주간 협약과 회사의 정관에 담을 수 있습니다.

Licenses

해당 법인이 두바이본토 혹은 여러 프리존 중 어디에 설립되었는지에 관계 없이, 두바이의 모든 사업활동은 1개 이상의 사업면허를 필요로 합니다(단, Offshore지역은 제외 – 대개 이러한 법인들은 비운영 지주회사(non-operational holding company)이기 때문). 특정 규제대상인 사업활동의 경우 관련 규제기관 및 정부부서에서 추가적인 사업면허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중앙은행(Central Bank), 미디어 회사의 경우에는 국립미디어협의회(National Media Council), 제조회사의 경우에는 재정부(Ministry of Finance)로부터 특별 승인이 요구됩니다.

두바이본토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경제개발부로부터 사업면허가 발급됩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면허에는 다음의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상업면허 (Commercial Licence) – 모든 종류의 상거래
- 산업면허 (Industrial Licence) – 제조업 등 산업 활동
- 전문면허 (Professional Licence) – 전문직서비스

프리존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프리존 기관에서 사업면허가 발급되며, 각 프리존마다 다른 유형의 사업면허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프리존 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무역면허 (General Trading Licence): 수출입, 배급, 저장 및 판매가 가능하나, 두바이본토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무역면허 (Trading Licence): 허가받은 특정 물품에 한하여 수출입, 배급, 저장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산업면허 (Industrial Licence): 원자재 수입, 특정 제품의 제조 및 완제품의 수출이 가능합니다.

용역면허 (Service Licence): 프리존 내에서 허가된 특정 부문에 대하여 용역 제공이 가능합니다.

국가 산업면허 (National Industrial Licence): 본 허가는 GCC 국적자가 최고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회사에만 해당이 됩니다. 프리존 내의 제품에 더해지는 부가가치가 최소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본 허가를 소유한 회사는 UAE 내에서 자국민 혹은 GCC 국적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Dubai Freezones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바이에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리존이 존재합니다. 두바이본토가 아니라 프리존에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후에는, 해당 회사를 어느 프리존에 설립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회사의 설립장소가 두바이 본토일지 프리존일지를 결정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아보이지만, 회사의 목적과 사업상 필요에 각 프리존의 특징이 잘 부합하는지를 다각도로 고려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두바이 내에만 24개가 넘는 프리존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목표와 사업상 필요에 기초하여 두바이 프리존 선택 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 등록 및 법률 비용을 포함하는 설립 비용
- 프리존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지원 서류 및 수속 기간을 포함하는 설립 소요 기간
- 각각의 프리존이 집중하는 산업 분야 (투자자의 사업과의 시너지)
- 두바이 내에서 프리존의 위치 (예를 들어, 인접한 항구, 공항 등)
- 프리존 주소가 갖는 상징성
- 프리존 내 사무실 장소 혹은 창고 등의 가용성 및 비용
- 프리존 내 허가 행위의 범위
- 프리존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

두바이 내에서 잘 알려진 프리존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Jebel Ali Free Zone (JAFZA) www.jafza.ae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DIFC) www.difc.ae

Dubai Creative Clusters Authority (DCCA) www.dcca.gov.ae

Part of DCCA – Dubai Design District (d3) www.dubaidesigndistrict.com

Dubai Airport Free Zone (DAFZA) www.dafz.ae

Dubai Multi Commodities Centre (DMCC) www.dmcc.ae

Dubai Silicon Oasis (DSO) www.dsoa.ae

Dubai South (DS) www.dubaisouth.ae

여러분의 사업상 필요 및 목적에 부합하는 프리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파트너변호사이자 회사설립관련 책임변호사 (Regional Head of Corporate Structuring)를 맡고 있는 Samer Qudah(Email: s.qudah@tamimi.com) 및 저희 Korea Group 구성원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 vibrant night-time photograph of the Dubai skyline, featuring several prominent skyscrapers like the Burj Khalifa and the Burj Dubai, illuminated with various lights and reflecting in the water below. The sky is a deep blue, and the city lights create a colorful glow.

Employment Law in Dubai

Employment Law in Dubai

아랍에미리트와 두바이에서의 고용 관계는 일반적으로 최소의 기본 고용 조건을 명시한 연방 노동법 (Federal Law No. 8 of 1980 (as amended))(이하 "UAE노동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연방 국가로서 UAE 노동법 조항들은 UAE에 기반을 둔(프리존 포함) 모든 민간 기업의 고용주들에게 적용됩니다. 프리존 내부에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체에게는 별도로 적용되는 노동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 규정들은 UAE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한편, 몇몇 국영 기업들은 민간 기업처럼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UAE노동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현재 UAE노동법 관할 범위 안에서 제외되는 두바이의 유일한 기관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이하 "DIFC") 입니다. DIFC에는 별도의 법원 및 고용관련 규정(DIFC Law No. 4 of 2005, 이하 "DIFC노동법")이 존재하고, 이것은 DIFC 내에 기반을 두고있는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 고용 계약

두바이

UAE노동법은 고용기간과 관련하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계약과, 고용 만료 기간이 없는 무기한고용계약을 제공합니다. 기간제계약의 경우, 최대 4년 이상의 기간은 보장될 수 없고, 고용 개시일 및 종료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합의된 고용기간 만료 시점 이후에 갱신될 수 있습니다.

DIFC

DIFC노동법 또한 기간제계약과 무기한고용계약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간제계약의 경우 법에서 최장 계약 기간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기간제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특별한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2. 수습기간 (probation)

두바이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사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해도 이 기간은 추가로 연장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언제든지 수습 기간 이내 혹은 수습 기간 종료 시 특정한 사유나 사전 통지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고용이 지속될 경우, 이 수습기간이 근로자의 총 고용 기간 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DIFC

DIFC 노동법은 수습기간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상, UAE노동법 조항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즉, 최장 6개월)이 권장되지만, 결국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좌우되게 됩니다.

근로자를 수습기간 내에 해고할 시, DIFC노동법의 일반적인 해고 관련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3. 임금/급여

두바이

UAE에는 법정 최저/최고 임금이 존재하지 않지만, 배우자나 자녀의 거주 비자를 스폰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월 급여가 적어도 AED 4,0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부모를 스폰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월 급여 기준이 최소 AED 20,00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급여 명세서의 세부 사항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개별적인 고용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지배됩니다.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주/격주/월별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UAE에서는 (주로 육체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급여가 제 때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전자 급여 보호 시스템(Wage Protection System; 이하 "WPS")을 운영하여, 급여 지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WPS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기등록되어 있는 근로자명부와 급여내역과 대조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DIFC

두바이에서와 마찬가지로, DIFC에도 최저/최고 임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DIFC노동법에 따르면 적어도 월단위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매 급여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4. 법정 공휴일 및 연차휴가

두바이

두바이에서는 공휴일/국경일의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8개의 절기에 대하여 최대 11일의 휴일을 갖게 됩니다. 모든 (민간 부문의) 근로자에게 다음의 휴일은 국경일로 인정되어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 Al-Hijra (이슬람 신년 휴일) – 1일
- 1월 1일 (기독교 신년 휴일) – 1일
- Mouloud (모하메드 탄신일) – 1일
- Al Meiraj (모하메드 승천일) – 1일
- Eid al-Fitr (라마단기간의 마지막 날) – 2일
- Martyrs Day (순국선열을 기리는 휴일, 11월 30일) – 1일
- 건국 기념일 – 1일
- Eid al-Adha (아브라함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휴일) – 3일

특정 공휴일(예, Eid Al Fitr)의 경우, 달의 관측 주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예상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후, 해당 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날짜를 확정하여 공휴일을 선포합니다.

민간 기업들은 공휴일에 근로자의 휴무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대체 휴무일을 갖게 되거나, 해당 일자에 대하여 기본급의 150%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지정된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고용주는 대체 휴무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기 열거된 공휴일에 더하여, 근로자들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AE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는 연차 휴가가 제공되지 않고, 6개월 이후부터 매달 2일의 연차를 갖게 되어 근속 첫 해에는 총 12일의 연차휴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속 첫 해의 최소 연차휴가 발생조건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일할 계산 방식이 더 흔하게 사용됩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매 년 역일 기준으로 30일의 연차가 주어져며, 이는 영업일 기준 약 22일의 연차와 동일합니다.

UAE노동법에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연차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의 경우, 다음 해로 연기하여 사용하거나, 고용 종료시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DIFC

국경일은 UAE 전역에 걸쳐 적용되지만, DIFC노동법에는 해당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 보전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적어도 90일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누적하여 영업일 기준 최소 20일의 연차 휴가를 지급받게 되며, 미사용한 연차 휴가는 최장 12개월 동안 사용을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그러나 DIFC노동법에서 잔여 휴가의 임금 대체 지급 방식은 고용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만 가능하거나, 고용주가 동의했을 시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근무시간과 초과 수당

두바이

UAE 노동법에 명시된 일일 최대 근로 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 5일 근무 근로자는 주 40시간, 주 6일 근로자는 주 4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UAE 노동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들은 5시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1시간의 휴식 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일일 근로시간이 2시간씩 줄어듭니다.

초과근무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경우 시간당 125%(평일 오후9시 ~ 오전4시 및 금요일/공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시간당 150%)의 초과근무수당이 주어집니다. 노동부조례에 의하면, 이사회 의장, 임원, 부서장 이상 직급의 관리직은 초과근무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DIFC

DIFC노동법에는 근로자의 7일 기준 평균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마단 기간 중에는, 금식하는 무슬림 근로자는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기타 다른 급여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 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매 24시간 기준으로는 11시간 이상, 매 7일 기준으로는 24시간 이상의 일과 후 휴식시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6. 병가 및 의료 보험

두바이

UAE노동법상 병가는 역일 기준 90일(사고나 발병 직후 최초 15일 간은 급여 100% 지급, 이후 30일은 급여 50% 지급, 최종 45일은 무급)이며, 수습 기간중인 근로자에게는 유급 병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더이상 고용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 병가 종료시점에 법적으로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병가기간 중에는 불가함).

2013년 11월 두바이 정부는 모든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의료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효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주의 직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16년 6월에는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일부 프리존은 본 법안발효 이전부터 프리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보험을 필수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DIFC

DIFC노동법에서 최대 병가 일수는 12개월 기준 총 60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12개월 이내에 영업일 기준 총 60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계약은 서면으로 즉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DIFC의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의료 보험을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7. 출산 휴가

두바이

근로자들은 최소 1년 근속시, 출산일 이전/이후로 45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휴가기간에 50%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여성 근로자가 산후 질병으로 업무 재개가 불가능한 경우, 출산 휴가 이외에 100일의 무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후 18개월의 기간 동안, 매일 30분씩 2회의 수유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DIFC

출산 예정주 이전까지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최소 65일의 출산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휴가 중 포함되는 공휴일은 출산 휴가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만큼 휴가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출산 휴가 중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최초 33일: 100%
- 이후 32일: 월급의 50%

근로자는 출산 휴가를 급여로 보전받을 수는 없습니다.

8. 순례 휴가

두바이

근로자는 고용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성지 순례를 위한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역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DIFC

DIFC노동법은 UAE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순례 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9. 연간 귀향 항공권

두바이

UAE노동법에 따르면 매년 귀향 항공권을 지급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특정 프리존의 경우 내부 노동 규정에 명시된 조건이기도 합니다. 개별 고용주는 재량에 의해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이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DIFC

마찬가지로, DIFC노동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관례상 연간 귀향 항공권을 제공합니다.

10. 해고

무통지 즉결해고

두바이

고용주가 사전 통지 없이 근로자를 적법하게 해고할 수 있는 근거는 한정되어 있으며(퇴직금은 제공되지 않음), 그러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위조된 신분 및 국적을 취득하거나 위조된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수습기간 중 또는 기간만료 후 해고하는 경우
-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 고용주는 피해 발생을 인지한 시간으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이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직무 또는 사업장의 안전지시를 위반한 경우. 단, 해당 지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문맹인 경우 구두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재범 시 해고조치에 대하여 경고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비밀을 유포한 경우
- 관할법원에서 명예,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침해한 범죄로 근로자에게 최종판결이 선고된 경우
-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주류 또는 마약류에 취한상태에 있는 경우
-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고용주, 관리책임자 또는 업무상의 동료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 근로자가 1년 중 총 20일 이상 또는 연속으로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경우
- 근로자가 병가 혹은 연차 휴가 기간동안 다른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경우

DIFC

DIFC노동법은 사전 통지 없이 해고하는 조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 – Termination for cause” 라는 유사한 원칙을 적용하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고용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UAE 노동법상의 해고 사유의 목록과는 상반되게 DIFC에서는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고용 계약

두바이

무기한 고용계약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는 어떤 합법적 사유로든 30일 이전 통지를 통해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사전 통지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통지 후 30일의 기간 동안에도 고용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통지 대신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나 근로자가 고용 계약을 종료하기 이전 사전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시에는, 이를 위반한 당사자가 사전 통지를 대신하여 다른 배상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상대방이 어떤 손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사전 통지를 대신하는 배상 금액은 통지 기간 동안 만큼의 근로자의 정상 임금과 같습니다(사전 통지를 했다면 통지 기간이 부족한 만큼을 일할계산하여 제공).

고용주가 제시한 사유가 근로자의 성과와 무관한 해고의 경우, 이는 고용주의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간주합니다. UAE노동법은 강제 해고된 근로자의 배상 금액을 3개월 분의 급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근로자를 건강 상의 이유로 해고할 시에는, 근로자가 반드시 모든 병가를 사용한 후에 해고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어떠한 협의나 계약서도 무효가 됩니다.

DIFC

정당한 사유'에 의해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고용주나 근로자는 고용계약 종료 시에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 근속 3개월 미만: 7일
- 근속 3개월 이상 5년 미만: 30일
- 근속 5년 이상: 90일

당사자들은 상호 동의 하에, 사전 통지 대신 임금 지불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

두바이

고용주가 기간제 고용계약을 만료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3개월 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조기 해고 배상액 혹은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임금 중

더 짧은 기간에 대한 배상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전통보기간 (notice period) 등의 이슈는 상호합의에 앞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계약서 작성 및 해지조항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직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3개월 분 급여의 50% 혹은 잔여 계약 기간 임금의 50% 중 더 짧은 기간 만큼의 조기 퇴사 배상액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DIFC

DIFC노동법상에서 기간제 계약과 무기한 계약 사이에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기간제 계약 해지시에는 무기한 계약과 동일한 사전 통지 관련 조항이 적용되나, 기간제 계약이 계약 만료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되는 경우, 근로자는 잔여 고용 기간에 대한 손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DIFC노동법에는 조기 계약 해지에 대한 명시적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11. UAE 국적 근로자

두바이

2009년, 노동부에서는 UAE 국적 근로자의 고용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조건이 담긴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UAE 국적 근로자를 고용주가 노동부에 사전 신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해고 날차 최소 30일 이전 신고). 신고 후에는 노동부가 UAE 국적 근로자의 해고가 유효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 조사하여, 만약 적절한 법적 사유가 아니라고 결정될 시에는, 고용주에게 상황 해결을 위해 15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DIFC

DIFC 노동법 하에서 UAE 국적 근로자들은 고용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별도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12. 퇴직금 (End of Service Gratuity)

두바이

UAE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 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근무 1 - 5년: 매 1년마다 기본급의 21일 분
- 근무 5년 이상: 매 1년마다 기본급의 30일 분

퇴직금은 최대 2년 치의 급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사전 통지 없이 적법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 기간에 따라서 퇴직금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속 기간	기간제 계약	무기한 계약
1 - 3년	해당 없음	총 퇴직금의 1/3
3 - 5년	해당 없음	총 퇴직금의 2/3
5년 이상	총 퇴직금	총 퇴직금

고용주는 통상적으로 급여를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법적으로 급여를 이러한 방식으로 나누어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고용주는 추후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인 경우 총 급여의 60% 정도를 기본급으로 상정하여 지급합니다.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연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연금과 퇴직금 중(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택일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해당 연금이 고용주의 퇴직금 대신 제공되는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퇴직금 대신 제공되는 연금이 퇴직금보다 불리한 조건이면 허용되지 않음), 이를 어길 시 근로자는 연금과 퇴직금 모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DIFC

DIFC의 퇴직금은 기간제 계약과 무기한 계약 간에 구별이 없으며,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퇴직금 차감은 없습니다.

DIFC노동법에 의하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 계약 종료 시에 다음과 같이 일할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속 1 – 5년: 매 1년마다 기본급의 21일 분
- 근속 5년 이상: 매 1년마다 기본급의 30일 분

퇴직금은 최대 2년 치의 급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해고되었을 때는 퇴직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연금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퇴직금대신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만 한하여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UAE 및 GCC 국적자들을 위한 연금 제도

두바이

고용주는 법적으로 UAE와 GCC 국적을 가진 근로자 중 해당 자격을 갖춘 (eligible) 근로자들에게 연금을 제공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non-eligible) 근로자(또한 외국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UAE 와 GCC 국적 근로자에게까지 연금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기에 명시된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퇴직금 대신 연금으로 조건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각각 자신의 개인 연금 방식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인 연금의 경우 고용자가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며, 보통 고급 사무직 종사자(white-collar)에게 개별 고용계약의 추가 혜택으로서 제공되기도 합니다.

DIFC

DIFC노동법은 해당 자격을 갖춘 UAE 와 GCC 국적자들의 경우 고용주가 연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4. 본국 송환 항공권

두바이

고용주는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사전 통지 없이 적법하게 해고된 경우는 제외).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그가 스스로 지불할 수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혜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UAE 내에서 다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 고용주가 본국 송환 혜택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DIFC

DIFC 정부(DIFCA)와 고용주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 스폰서십 합의서(Personnel Sponsorship Agreement)의 조건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용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 비자와 근로허가(Work Permit)를 받지 않는 한, 고용주는 즉시 DIFCA에 근로자의 거주 비자와 근로허가에 대하여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항공권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15. 자국민 우선 고용 원칙 (Emiratisation; 이하 “에미라티제이션”)

두바이

이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UAE 국민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으로, 고용주에게 채용 목표 할당량을 제공하여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UAE 국적자의 취업수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할당량을 채우며 다양한 인력 구성을 목표로 하는 고용주에게, 정부는 입국 허가증(Entry Permit), 거주 비자, 근로자 카드, ID 카드 발급 비용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미라티제이션의 비율은 모든 민간 기업에 동일하게 최소 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50인 이상 기업). 은행과 보험 관련 기업들에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되며, 매년 UAE 중앙 은행 및 UAE 보험국의 결정에 따라 해당 비율이 결정됩니다.

2011년 1월 발효된 의회 결의안에 따라 에미라티제이션정책에 반하는 고용주는 벌금/벌점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전문가급의 UAE 국적자를 15% 이상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인센티브(근로자를 위한 은행 보증 비용 지불 면제)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등급의 고용주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은행 및 보험 회사들의 경우, 별도로 요구되는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DIFC

에미라티제이션은 DIFC를 비롯한 기타 프리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상 고려사항

대부분의 경우, UAE에 등록된 고용주의 경우 노동부 혹은 해당 프리존 정부로부터 근로허가 및 신분증을 취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UAE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거주비자 발급의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UAE의 고용주들은 해당 근로자가 거주비자 소유주의 직계 가족(배우자 및 자녀) 혹은 GCC 국적자가 아닌 한, 거주를 위하여 스폰서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비자를 위한 스폰서십이 필요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허가 및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은 거주비자 취득 절차의 과정으로, 에미리트 ID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주 비자 발급 과정은 대개 다음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서명한 오퍼레터를 UAE 노동부(Ministry of Labour)에 제출(프리존의 경우, 해당 절차가 요구되지 않음)
- UAE 노동부/프리존에 근로자의 UAE 입국을 허가하는 입국허가증 ("entry permit")을 신청
- 취업을 목적으로 한 UAE 입국
- 이민국에 거주 비자 서류 지원
- 개인에 대한 신원 및 보안 조회(현재 특정 국가의 국적자에 대해서는 UAE내에서 거주비자 취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건강검진(주로 전염병 감염등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 흉부 X-ray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특정 전염병 보균자의 경우 거주비자 신청이 자동적으로 거부됩니다.
- 근로허가/신분증 및 에미리트 ID카드 신청
- 여권에 거주비자 부착을 위한 서류 제출. 거주비자는 2년간 유효합니다(프리존의 경우 3년).

التميمي و شركاه
ALTAMIMI & CO.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